



# 두엄누리회보

www.duem.or.kr

제19호 2004년12월29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 발표

지난달 15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지난 4월부터 9월 까지 합동 T/F팀을 구성해 장기계획에 의해 마련되었다.

가축분뇨 이용에 있어서는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업계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골자를 보면 2013년까지 10년간 2조1,035억원을 투자하여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축산을 진흥하여 수질 개선으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분뇨 발생저감. 2.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진흥 3.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4.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 관리강화 5.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6.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6. 연구 및 교육홍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중 우리와 관계가 많은 부분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하다.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확대
-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비율 조

정 및 지역별 차등화 지원(매년 482억원)

-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지방비 2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부담 경감

- 양분총량제 등과 연계, 가축 과밀 사육지역은 지원 축소·중단

-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시설 지원 확대

#### ○ 액비저장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선

- 기존의 액비생산을 위한 단일 저장조 개념에서 액비 생산과 저장·살포를 분리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액비이용 확대

- 액비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시비처방서에 따라 살포토록 하고 환경개선제 투입 효과를 관리기준에 반영

#### ○ 농가시설 운영·관리 진단 및 기술지원

- 축산연구소, 농협중앙회 및 9개 지역본부 등의 전문인력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시설진단 및 기술지원

#### □ 가축분뇨 가격경쟁력 제고

○ 유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10년간 5,340억원)

- '04년 210억원 → '07년 540억원 → '10년이후 675억원/년 지원

○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가격보조 폐지

#### □ 퇴·액비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 비료공정규격에 “가축분퇴비” 신설 및 “가축분뇨발효비료(액)” 규격 개정

- 미 발효된 퇴비 및 불량 퇴·액비 유통 차단

- 부산물비료내 질소, 인산, 칼리 등  
주요 성분표시제 도입

○ 퇴·액비 성분분석체계 구축

- 퇴·액비 성분무료검사 및 시비처방  
서 발부 등 적정시비 유도

- 현장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숙도(腐  
熟度) 판단기준 마련, 보급

□ 퇴·액비 유통활성화

○ 지자체 중심으로 퇴·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참여 :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민간  
유통업체, 축산농가, 경종농가

- 살포센터는 축산농가 비료화시설을  
관리해 주고 퇴·액비를 수거하여 성  
분을 분석한 후 시비 처방서에 따라  
살포 대행

- 각도별 1개소 시범사업(8억원)을  
거쳐 보급 확대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 가칭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  
률” 제정(공동입법)

○ 현행 오분법 중 가축분뇨 관리제  
도를 별도 입법화

○ 주요 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기준, 유통  
센터 설치근거 등 자원화 촉진  
규정 마련

- 시설면적과 사육두수 규제 병  
행,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지역, 밀  
집사육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  
로 지정

- 관리대상에 개, 염소 등 미규제  
가축 추가 등

○ 2005.6월까지 양부처 합동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중 법률  
제정

□ 기타 제도개선

○ 사료공정규격 및 가축분뇨 퇴·액  
비 비료공정규격 정비  
이상과 같이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을 보면 가축분뇨를 원료로한  
퇴비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5,340억원을 보조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발표되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  
이다.

비료 공정규격에 『가축분 퇴비』의  
신설 및 『가축분뇨 발효비료(액)』규격  
개정 등은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듯  
보이고 퇴·액비 유통활성화 방안으로 제  
시한 지자체 중심의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은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계획 중 지방비 20%추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하겠다.

이는 지방비 보조 확대로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날뿐더러 참여 방법도 다를 수 있  
어 우리업계의 지역별 활동이 많이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축분뇨의 활용은 유통이 잘 되어  
야 하므로 원료 공급 및 발생업체인 축산  
농가보다는 우리 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원활히 해결된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문 답식으로 알아보는 악취방지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아 환경부에 질의  
된 문답식내용을 간추려 그 궁금증을 풀  
어본다.

문: 악취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005년 2월 10부터 시행된다.

문: 악취방지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은 어대인가

답: 악취관련 업무는 시. 도지사 권한이  
다.

문: 배출허용기준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의 적용 시기는 다른 것인지?

답: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 (2005.2.10)과 동시에 적용되며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은 시, 도지사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한 경우, 동 조례에 규정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문: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 및 부지 경계선 공히 적용되는지 부지 경계선에서만 적용되는지?

답: 지정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부지 경계선에서 적용된다.

문: 지정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시, 도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 지역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답: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7조 규정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중에서 시, 도지사의 판단기준은 시, 도지사가 조례나 지침 등으로 정하게 된다. 또 지정 지역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판단하여 공업단지 전체를 지정 할 수도 있고 개별공장이나 동 단위, 공단구역(블럭)별로도 지정할 수 있다.

문: 악취의 자가 측정의무는 있는지?

답: 자가 측정의무는 없다.

악취는 유해 오염물질이라기 보다는 감각공해 이므로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악취 민원이 없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원이 우려될 경우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 한다면 악취를 제거 또는 방지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된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의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의 설치
- 가. 연소에 의한 시설
- 나. 흡수에 의한 시설
- 다. 흡착에 의한 시설
-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마. 응축에 의한 시설
- 바.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유기성오니를 발효시켜 비료를 생산하는 우리 업체는 대다수가 악취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여 갑작스럽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민원 발생 후 급히 시설 설치를 하려면 전문회사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는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업 존폐의 위기까지 몰리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생산능력검증 실시협의

지난 12월 3일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생산능력 검증 실시에 따른 구체적 방안에 관해 두 단체 간 협의회가 있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 상원 회장과 사무국장이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에서는 김 장희 이사장과 김 영화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두 단체 간 대표가 만나 협의회를 가진 것은 우리 협회가 법인 인가를 받은 이후로 처음 있는 일 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농림부 지침(2005년도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생산능력 검증은 비료의 품질관리는 물론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보조비료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이므로 보조 대상 품목인 퇴비제조 시설에 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퇴비는 다른 비료와는 달리 꼭 발효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이므로 발효시설에 대한 종류를 선정하였다.

현 비료 관리법상 시설 기준이 없어

1995년 당시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공동퇴비장 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크게 2가지로 기계식 교반시설과 통풍식(일명 바루커식)발효시설로 분류하고 각 시설의 최대용량과 최대효율을 적용하여 두 시설 같이 발효조에서의 발효일수는 18일로, 용량은 전체용량에서 기계식은 상단부 20 cm만 감하고 통풍식의 경우는 전면 문짝이 없을 경우 용량에 20%를 감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하였다.

두 단체 간에는 협의 되었으나 농협에서 하는 비료공장과, 도 지역본부 및 시. 도에서 추천하여 참여하는 업체들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이 단체들과 협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이것이 실행되어 생산량이 보고 되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는 보고 된 생산량 이상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친환경.유기축산 정착방안 정책세미나

지난 12월 1일 한농연회관 5층 대강당에서 농어민 신문사와 한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최로 효율적인 유기축산 방안모색과 제도, 정책적 친환경 축산 정착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특별강연으로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이 주제발표로 오상집 강원대 교수와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참석자는 △서종혁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좌장), △권두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박사, △강영식 한우 유기축산농가, △손이현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전정규 양돈협회 이천지부 사무국장, △한경 유기우유생산농가가 참석하였다. 아직은 유기 축산과 우리 분야가 별 관계가 없는 듯 보이기 는 하나 농업전체의 흐름이 유기농업으로 가고 있고 퇴비의 주 원료가 축분인데 내년부터 유기농업자재에 공장형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원료로한 퇴비는 사용이 금지되어있어 우리분

야의 입장과 처지를 알리기 위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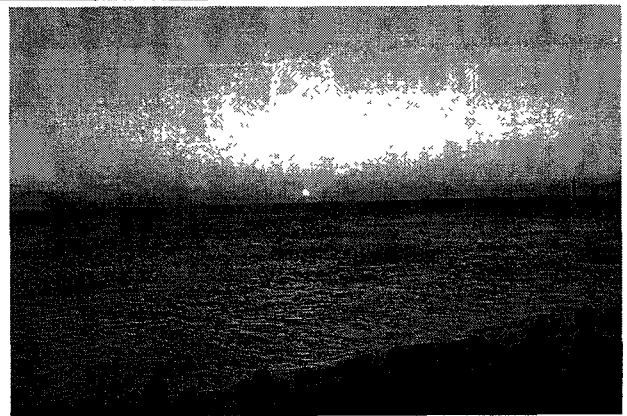
유기 축산은커녕 관행적인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축분 처리 및 제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정책 제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업계를 대신하여 『축산농가의 전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그간 발생한 축분을 부산물 비료업자들이 도맡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적 관계를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유기농업이 경제농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부산물 비료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며,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방안으로도 부산물비료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양돈분뇨도 사료에 항상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료재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공장형 퇴비는 유기농업에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예고된다. 잘 발효된 퇴비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부산물 비료업체들은 20여년 가까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부산물비료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노하우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謹 賀 新 年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적극 협조해주시 회원사 모든분께 진심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계획한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